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-9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치산·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한정후견·성년후견제가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금치산·한정치산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 개정

나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7. 10. 19. ~ 11. 8.) : 제출의견 없음

나.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
다.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 11. 16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공단의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이사장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이사장을 해임하거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78조제3항”을 “법 제7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미성년자
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1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이였음”을 “사람이었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”을 “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결의하게 하기”를 “결의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대하여는 감사가”를 “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”를 “대해서는 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, “알게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, “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자 4명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를 “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
제19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속공무원(구의회의원)”을 “소속 공무원(구의회 의원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관계기관에 대하여”를 “관계기관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7호 중 “밖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”를 “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7호까지”로 한다.

제31조제5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제27조의 규정”을 “제2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월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제3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41조 중 “영 제68조의 규정”을 “영 제68조”로 한다.

제44조제2항 중 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부서”를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구청 부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중 “법 제75조의2의 규정”을 “법 제75조의2”로 한다.

제46조제2항 중 “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47조를 삭제한다.

제48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</u> <u>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4조(자본금) ① (생략) ② <u>제1항의 규정</u>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 <u>공단의 이사장</u> 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임면하되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<u>자</u>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 종료에도 <u>불구하고</u>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 3. <u>법 제78조제3항</u>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</u> <u>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4조(자본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이사장) ① <u>이사장</u>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. -----.</p> <p>② ----- <u>이사장을 해임하거나</u> ----- -----.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78조제4항</u>----- -----</p>

③·④ (생략)

제9조(이사) ①·② (생략)

③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 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. 다만,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(생략)

제10조(감사) ① 감사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
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이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사람 _____

_____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감사) ① _____
_____ 사람 _____
_____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_____
_____ 사람은 _____
_____.

1. _____ 사람

2. 미성년자
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제13조(이사회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
④ (생략)

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

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삭제>

② -----

----- 사람이었음 -----
-----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 -----
-----.

제13조(이사회) ① -----
----- 결의하기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---- 대해 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대

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와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4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비밀누설 금지 등) 공단의 임·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공단은 법 제58조제3항, 제6항 및 제76조에 따라 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

해서는 예산의 범위-----
-----.

⑥ ----- 필요-----
-----.

제14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---

----- 대해서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비밀누설 금지 등) -----
----- 사람은
----- 알게 된 ----- 직
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-----
----- 제7항 -----

-----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.

1.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 3명
3.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(생략)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 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구 소속공무원(구의회위원을 포함한다)은 위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
- 사람으로 ---. -----

- 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 --.

1. ----- 사람 --
2.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
3. ----- 사람 --

② -----

----- 사람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사람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사람

③ -----

----- 소속 공무원(구의회

의원-----

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(생략)

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21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 임원후보로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제24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)

① 위원회는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6조(사무협조)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, 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없
으면 -----
-----.

제21조(위원회의 존속) -----
----- 사람이 -----
-----.

제24조(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)

① -----

----- 사람을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없으면 --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사무협조) ① -----

관계기관에게 -----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7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1. ~ 6. (생략)
- 7. 그 밖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
- 8.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
제3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~ ④ (생략)

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32조(수입 및 정산)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

② -----
----- 없으면
-----.

제27조(사업) -----
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-- 밖에 -----

- 8. ----- 제7호까지-----

제3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없으면 -----

-----.

제32조(수입 및 정산) ① 제27조-----

-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 2개월

결과 미지급금,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38조(일시차입금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39조(감독) ① (생략)
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41조(경영평가)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4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

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

-----.

제38조(일시차입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-----
-----.

제39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대해
서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경영평가) -----

----- 영 제68조-----
-----.

제44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구청 부서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대해서-----

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5조(업무상황의 공표)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46조(공인의 비치) ① (생략)

② 공인의 규격,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47조(과태료)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제45조(업무상황의 공표) ① -----

- 법 제75조의2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공인의 비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필요-----
-----.

<삭제>

제48조(시행규칙) -----

필요-----
-.